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	배포일시	2020. 1. 2(목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대광위 광역버스과	담 당 자	• 과장 박문수, 사무관 박선동, 주무관 박미희 • ☎ (044) 201-5065, 5069, 5066	
	교통물류실 대중교통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동준, 사무관 장기영 • ☎ (044) 201-3823, 3824	
보 도 일 시		2020년 1월 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3(금) 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내 집과 가까워지고, 올해부터 수도권 외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운행됩니다

-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-


- 인천,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·울산권, 대구권, 대전권,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(M버스)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2019년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뤄졌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,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정류소 설치 수량 : 최대 12개(기점 6개, 종점 6개) → 최대 14개(기점 8개, 종점 6개)

정류소 설치 거리 :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.5km 이내에 설치(변경 없음)

- 이는,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,
 -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.
 - 또한,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한정되어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·울산권, 대구권, 대전권,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 - 아울러, 출·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,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하여 주말, 방학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였고,
 - * (일일 운행횟수별 운행 횟수 또는 대수 증·감률) △60회 이상/일 : 40% → 50%, △10회~59회/일 : 30% → 40%, △5~9회/일 : 20% → 30%
 - 출·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(11시~17시)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운행횟수 또는 대수를 20%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
 - * 반면, 새해부터는 출·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하여 혼잡 노선 증차 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('20년, 4.63억원)
 -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·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되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 관광누리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버스과 박선동 사무관, 박미희 주무관(☎ 044-201-5069, 5066), 대중교통과 장기영 사무관(☎ 044-201-38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